

제 1174 호
1985. 9.1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문관
편집인 : 공보관리공무원
전화 : 731-6111-3
주소 :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596 호 :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 (건축계획) 고시 2

제 597 호 :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및 취소고시 2

◎ 공 고

제 523 호 :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제지 및 변경인가를 위한
공람공고 3

제 524 호 :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제지 일부변경 공람 및
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 공고 4

◎ 사 령

포											
합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96 호

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
(건축계획) 고시

1. 서울시고시 제 487 호 (85.7.22)로 사업계획 결정된 소공제 2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5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3 조 의거 소공제 2 구역 재개발사업 (건축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 동법제 5 조제 6 항 단서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결정내용

- 건물형태 및 배치변경
- 나. 관계도면 : 별첨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97 호

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
결정고시및취소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380 호 (79.9.24) 로 지정된 동자동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제 5 항, 동법시행령제 58 조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거 동자동구역 제 2 지구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 5 조 제 6 항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 단, 서울시고시 제 488 호 (85.7.22)는 취소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결정조서

지구명	구분	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층수	주용도	비고
동자동구역 제 2 지구	당초	7,561	34.2 %	580.2 %	15/2	업무, 상업	
	변경	7,868.8	24.21 %	357.06 %	15/4	업무시설	지하 1 층 판매시설 및 주차장

나. 관계도면 : 별첨 (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23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폐지
및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470 호 (73.12.1)
같은고시 제 184 호 (75.11.13) 및
제 338 호 (83.10.1) 로 구역지정되고,
같은고시 제 294 호 (74.8.30), 제
145 호 (74.5.13), 제 18 호 (75.2.
8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40 호
(77.9.23) 제 380 호 (79.8.28) 제
103 호 (79.3.2) 제 380 호 (79.8.
28) 제 213 호 (76.9.) 로 실시계

획인가된 주택개량재개발 명문, 회현
송인, 창신 5, 금호 3, 금호 4, 월계,
연희 1, 상도 5, 봉천 1, 사당 1, 신강
1, 현저 3 구역에 대하여

2. 당초 인가된 실시계획의 내용중
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시행인가
폐지 및 시행변경인가를 위하여 도
시개발법 제 30 조 및 제 31 조의 규
정에 따라 공람 공고한다.

3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
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에서 열
람할 수 있으며, 공고내용에 의견이
있을 경우 공고기간안에 관할구청
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기
바란다.

1985.9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시행인가 폐지내용

사업명칭	시행구역 (주소)	면적 (㎡)		주된사무 소소재지	시행기간	시행인가 년월 일	시행자 성명
		당초인가	시행폐지				
명문구역	종로명문 3 가산 3-15	98,010	98,010	서울 특별시	81.12.10	74.8.30	서울특별 시장
회현	중구회현 1 가산 1-2	8,690	8,690	"	81.12.31	77.9.23	"
송인	종로송인 58	57,901	57,901	"	80.12.30	74.5.13	"
창신 5	종로창신 400	12,860	12,860	"	81.12.31	77.9.23	"
금호 3	성동금호 2 가산 2.9	71,243	71,243	"	80.12.30	75.2.8	"
금호 4	성동금호 3 가산 2-4	49,795	49,795	"	80.12.30	75.2.8	"
월계	도봉월계 23	72,734	72,734	"	81.12.31	79.8.28	"
연희 1	서대문연희 2 산 6,5 번지	188,040	188,040	"	81.12.30	79.3.2	"
상도 5	동작, 상도산 51-1	79,917	79,917	"	81.12.30	75.2.8	"
봉천 1	봉천 3 동 1 번지	172,073	172,073	"	81.12.30	75.2.8	"

사업명칭	시행구역 (주소)	면적 (㎡)		주원사무 소소재지	시행기간	시행인가 년월일	시행자 성명
		당초인가	시행폐지				
사당 1구역	동작사당산 10-1	45,061	45,061	서울 특별시	81.12.30	75.2.8	서울특별 시장
신당 1	중구신당산 6	149,680	125,327.6	·	81.12.31	79.8.28	·
현저 3	종로현저 1 동 746 일대	151,524	35,041.7	·	81.12.30	76.9.4	·

나. 시행변경인가 내용

사업명칭	시행구역 (주소)	년 적 (㎡)		주원사무 소소재지	시행기간	시행인가 년월일	시행자 성명
		당초인가	변경인가				
현저 3구역	종로현저 1 746 일대	151,524	116,482.3	서울 특별시	81.12.30	76.9.4	서울특별 시장

다. 시행인가 폐지 및 시행변경 인가 사유

당초 서울시를 시행자로한 주민 자력개발을 위해 시행인가되었으나 재개발사업구역의 전체해제 또는 일부시행 잔여부분을 시행인가 폐지하고, 시행면적이 변경된 구역에 대하여 동 변경 시행면적으로 변경코처하는 것임.

라. 공람기간 : '85.9.13-'85.10.12
(30 일간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24 호

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
계획일부변경공람 및 환지계
획일부변경 공람공고

1. 건설부공고 제 37 호 ('79.3.29) 로
사업시행 인가되어 시행중인 구로토

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
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토지구
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일부변경
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규
정에 의한 환지계획 변경코처 동
법 제 33 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
도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게 14 일간 보인다.
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
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
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
별 통지한다.

1985. 9. 11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명 :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변경위치 : 구로구 구로동, 영등
포구 대림동, 신길동 각일부

다. 변경내용 1) 사업에 관한 계획 일부변경 (도로폭원 4m→6m, 연장 964 m)	2) 환지계획 일부변경 (40구획일대 기타) * 변경도시 생략
--	--

사 령

◎ 1985년 9월 11일자 령제 330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조 태 영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기획관리실 투자관리담당관	지방행정주사보

◎ 1985년 9월 12일자 령제 332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허 경 호	기획관리실 대단위사업 점검반 파견 ('85.9.12-'85.9.18)	서대문구 토목과	지방전기기사

서울특별시장